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7826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27.
발의자 : 김태흠 · 김도읍 · 박덕흠
이은권 · 주호영 · 원유철
이명수 · 정우택 · 박맹우
성일종 · 박대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획, 채취 금지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는 금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금지된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.

연어의 경우 금어기간이 10~11월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기간 위판량이 연간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. 예외조항을 이용해 포획, 채취하고도 이를 연구 등에 한정해서 이용하지 않고, 법률을 위반해 위판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포획 · 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 신설).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포획·채취 허가 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·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2.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3.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②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70조(과태료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<p><u>제26조의2(포획·채취 허가 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·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</u></p> <p><u>2.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</u></p> <p><u>3.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7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</u></p>

<p>② (생 략)</p>	<p><u>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</u> <u>를 부과한다.</u>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	---